



## 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Version: 01, dated 20100301

### 1. 총칙

1.1 Perstorp Group의 해당 회사("매도인")가 청약서나 주문확인서 또는 서명하여 유효한 서면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판매일반조건은 매도인 고객에게 ("매수인") 제공하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바, 매수인의 조건과 충돌하거나 이보다 나은 경우 이 판매일반조건에 따르면 매수인의 조건은 적용이 배제된다.

1.2 이 조건에 대한 포기나 수정은 매도인으로부터 적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 2. 청약과 승낙

매도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약은 청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간 유효하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주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3.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3.1 매도인의 카탈로그, 브로셔, 광고, 전단지, 데이터 시트(Data Sheet)와 가격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양, 공법, 방법, 규격, 가격 및 기타 정보는 청약의 유언에 해당할 때, 매도인의 계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양, 공식, 방법, 중량, 가격 및 기타 정보만을 신뢰할 수 있다.

3.2 이하 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회수하여 원래의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매도인이 추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당해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그러한 형태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비용을 보장한다.

3.3 매수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나 설명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 어떠한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소송으로 야기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책임 및 요구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할 의무가 있다.

### 4. 인도

4.1 매도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의 FCA조건으로 행한다 (계약일 현재 발표중인 INCOTERMS)에 따라 결정.

4.2 합의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인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인도기간의 연장이 6주를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제는 매수인이 새로운 인도기간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기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통보한 인도기간을 새로운 인도기간으로 간주한다.

4.4 인도 지연시 계약해제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 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위약금, 보수나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은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

### 5. 선적물량

인도된 물량이 계약상 명시된 물량보다 최대 10%까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에 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 6. 포장

6.1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반환하여야 하는 포장은 매도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포장은 오직 판매 물품의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

6.2 상기 포장은 인도 후 6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기한 내에 포장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사전에 공식적인 통지 없이 매수인에게 지면일수당 포장의 전체 대체비용(동일한 포장을 다시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0.5%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포장 반환 지면일 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포장의 대체비용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반환되어야 할 포장의 파손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매수인은 포장의 복구하거나 새로이 교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3 매수인이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특정 물품의 수송에 관한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을 사용한다.

### 7. 가격

7.1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세금, 관세 혹은 기타 정부수수료의 변동이나 원자재값이나 임금 등으로 증대하거나 예기치 아니한 비용이 발생하여 매도인의 물품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매도인은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2 매도인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언급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와 유사한 판매세나 판매세를 대체하는

여하한 세금 또는 여하한 유형의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 8. 지급

8.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된 물품의 대금은 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8.2 매도인이 물품의 대금 전액을 수령한 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의 귀책없는 사유로 매수인이 합의된 인도기일에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8.3 인도 완료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적의 이행하지 않을 것이거나, 지불능력의 감소 혹은 잠재적 감소 가능성이 있거나 재정상태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정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8.4 대금지급이 완료된 때까지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8.5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향후 물품 인도를 중지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구역 내에 출몰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매수인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9. 구제책 (불가항력과 관련)

9.1 불가항력적 이유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장애사유가 제거될 때까지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장애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2 불가항력적 사유된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군대동원, 전쟁, 봉자사태, 고강, 수출입 규제와 기타 정부의 개입, 화재, 사고, 홍수, 기타 자연재해, 용수부족, 기계고장과 기타 예기치 아니한 생산장애, 수송수단부족, 철도, 항공기나 기타 교통기관의 수송장애, 하청업체의 채무불이행이나 인도 지연 또는 기타 매도인의 부채가 불가능하거나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여하한 상황을 말한다.

9.3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곤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곤란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매수인은 곤란의 효과를 형평에 맞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에 합의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상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곤란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경감 혹은 완화시키는 데에 합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 10. 물품 하자과 부족

10.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된 물품이 매도인이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매도인은 그의 선택으로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교체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문제된 하자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이 있는 금액을 환불한다.

10.2 매도인은 공급된 물품의 하자가 다음을 원인으로 할 경우 하자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i) 매수인 (또는 그 직원과 고객)이 물품의 사용, 취급이나 저장에 관한 취급 및 그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대한 물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기타 정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ii)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송 중 물품의 손상 또는 포장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iii) 매도인의 인도 후 개조, 오용, 부주의나 사고.

10.3 인도 불량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은 부족한 물량을 인도하거나 이미 지급된 판매대금 중에서 부족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10.4 매수인은 각 선적화물이 도착하면 하자과 물량 부족과 수송 중 포장 파손에 관하여 조사한다.

10.5 매수인은 물품의 하자 또는 불량 부족 또는 포장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이를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어떤 경우는 인도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물품의 하자, 부족 또는 파손에 관하여 (하자, 부족이나 파손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하자, 불량부족이나 파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0.6 분쟁 중인 물품의 견본을 매수인의 국가의 견본채취에 관한 기존 규정에 따라 채취한다. 또한, 매도인은 분쟁 중인 물품을 검사하고 견본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은 파손된 포장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은 이 포장을 조사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다.

10.7 이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매도인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상품성이나 특정목적 부합성에 관한 묵시적인 보증 및/혹은 그의 물량, 품질, 종류, 물품의 특성 및 상태 등이나 소유, 취급, 저장, 수송, 가동, 재료의 사용 또는 저본, 물품의 단독사용이나 다른 물품과 혼합사용에 관한 경고의 적정성에 관한 보증은 비롯하여 어떤 진실이나 보증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도 하지 아니한다.

10.8 위 10.7조와 이하 10.9조에 따라 이 조건에 규정된 부당한 사항의 시정 또는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책이 되며, 이로써 건강과 제조물의 안전에 관하여 적용가능한 달리 규정된 경우 (제조물 책임)가 아닌 한, 물품의 부적합이나 하자 또는 결함에 관하여 그것이 보증책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경고 실패나 다른 책임(직접, 간접, 특별, 다중, 조진부 혹은 결과적 손해 포함)은 이행된 것으로 한다.

10.9 적용불가능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윤이나 이익손실, 제품의 용도손실, 매수인의 고객 또는 다른 물품 사용자의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손해, 다중, 조진부 또는 간접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경고 실패나 데스프리스포 포함), 부패된 책임 또는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사전에 손실이나 손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받은 경우와 하더라도 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총 책임의 범위는 매수인이 문체의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적용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매도인의 부상, 사기 혹은 기타의 책임으로 인하여 조제된 사망이나 신체에 관하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0.10 매수인은 매수인의 부주의나 부과위로 발생한 것인 지 또는 매수인이 제3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품이나 물질과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청구나 소송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비용 포함), 화재, 판결금액 및 경비로부터 매도인, 그 회사, 임원 및 대리인을 면책한다.

### 11. 비밀유지

매수인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알게 된 상중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정보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비밀유지의무는 정보의 공개 당시에 매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공지의 사실이거나, 매수인의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정보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2. 준거법과 분쟁

12.1 이 판매일반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판매일반조건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기타 계약은 매도인의 주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선택법에 적용되며, 당해 선택법은 임의사법의 원칙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2 이 판매일반조건에 따른 물품의 매도와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CC) 중재규칙에 따라 임명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동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절차는 런던, 파리, 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뉴욕이나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법정이 결정된 바에 따른다. 당사자 둘 중 중재절차는 집행가능하며 어느 당사자든지 관할법원에서 중재판정의 확정을 허가하거나 달리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12.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관할법원이거나 기타 당국에서 연체된 청구서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13. 기타

13.1 관할지의 어느 법원이나 행정 기관이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집행불능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13.2 부유, 지명불능 또는 위법한 규정 중 일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당해 규정이 유효, 집행가능 또는 합법적인 규정이 될 경우, 이를 유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13.3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조건을 변경, 이의이나 의무를 양도, 이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유되어 있는 그룹의 다른 회사에 이 조건을 양도하고 이전할 권리가 있다.

### 14. 해석

매도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분쟁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판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들 조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



# 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Version: 01, dated 20100301

## 1. 총칙

1.1 Perstorp Group의 해당 회사 ("매도인")가 청약서나 주문확인서 또는 서명하여 유효한 서면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이 판매일반조건은 매도인이 고객에게 ("매수인") 제공하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때때로 적용되는, 매수인의 조건과 충돌하거나 이긋남이 있을 경우 이 판매일반조건에 따르며 매수인의 조건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1.2 이 조건에 대한 매수인 수정은 매도인으로부터 적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 2. 청약과 승낙

매도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약은 청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주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3.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3.1 매도인의 카탈로그, 브로셔, 광고, 견본지, 데이터 시트(Data Sheet)와 가격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양, 공식, 방법, 중앙, 가격 및 기타 정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청약은 구성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양, 공식, 방법, 중앙, 가격 및 기타 정보만을 신뢰할 수 있다.

3.2 이하 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회수하여 원래의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하여야 하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매도인이 추진한 특정 목적 때문에 당해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3.2조의 전문에서 규정된 손해배상금에 추가하여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비용을 보상한다.

3.3 매수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나 설명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 어떠한 특허권, 산업디자인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소송으로 야기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책임 및 요구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할 의무가 있다.

## 4. 인도

4.1 매도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의 FCA조건으로 행한다 (계약일 현재 발효중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 4.2 합의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인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인도기간의 연장이 6주를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제는 매수인이 새로운 인도기간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 기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통보한 인도기간을 새로운 인도기간으로 간주한다.

4.4 인도 지연시 계약해제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위약금, 보수나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은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간접적 손해,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

## 5. 선적물량

인도된 물량이 계약상 명시된 물량보다 최대 10%까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에 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 6. 포장

6.1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반환하여야 하는 포장은 매도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포장은 오직 판매 물품의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

6.2 상기 포장은 인도 후 6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기한 내에 포장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사전에 공식적인 통지 없이 매수인에게 지연일수당 포장의 전체 대체비용(동일한 포장을 다시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0.5%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포장 반환 지연일 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포장의 대체비용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반환되어야 할 포장이 파손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매수인은 포장의 복구하거나 새로이 교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3 매수인이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특정 물품의 수송에 관한 현재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을 사용한다.

## 7. 가격

7.1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세금, 관세 혹은 기타 정부수수료의 변동이나 원자재값이나 임금 등으로 중대하거나 예기치 아니한 비용이 발생하여 매도인의 물품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매도인은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2 매도인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언급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과 유사한 판매세나 판매세를 대체하는 이하한 세금 또는 여하한 유형의 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 8. 지급

8.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된 물품의 대금은 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8.2 매도인이 물품의 대금 전액을 수령한 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의 귀책없는 사유로 매수인이 합의된 인도기일에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8.3 인도 완료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적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지불능력의 감소 혹은 잠재적 감소 가능성이 있거나 재정상태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정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함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8.4 대금지급이 완료된 때까지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8.5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향후 물품 인도를 중지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구역 내에 출몰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매수인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일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9. 구제책 (불가항력과 관련)

9.1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장애사유가 제거될 때까지 의무 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3개월 이상 장애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2 불가항력적 사유란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군대동원, 전쟁, 재정시스템 고장, 수출입 규제와 기타 정부의 개입, 화재, 사고, 홍수와 기타 자연재해, 용수부족, 기계고장과 기타 예기치 아니한 생산장애, 운송수단파괴, 켈도, 항구나 기타 교통기관의 수송장애, 하청업체의 재부불이행이나 인도 지연 또는 기타 매도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여하한 상황을 말한다.

9.3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곤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곤란에 대한 주장이 있는 후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매수인은 곤란의 효과를 회피에 맞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감경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에 조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상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곤란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감경 혹은 완화시키는 데에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서면에 이를 통지로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10. 물품 하자 및 부족

10.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된 물품이 매도인이 서면으로 확인한 사양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매도인은 그의 선택으로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교체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문제된 하자 및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액을 환불한다.

10.2 매도인은 공급된 물품의 하자가 다음을 원인으로 할 경우 하자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i) 매수인 (또는 그 직원과 고객)이 물품의 사용, 취급이나 저장에 관한 범위 및 그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대한 재료품질안전데이터시트(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기타 정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 (ii)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송 중 물품의 손상 또는 포장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 (iii) 매도인의 인도 후 개조, 오용, 부주의나 사고.

10.3 인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은 부족한 물량을 인도하거나 이미 지급된 판매대금 중에서 부족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10.4 매수인은 각 선택사항이 도착하면 하자 및 물량 부족과 수송 중 포장 파손에 관하여 조사한다.

10.5 매수인은 물품의 하자 또는 물량 부족 또는 포장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이를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떤 경우에는 인도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물품의 하자, 부족 또는 파손에 관하여 (하자, 부족이나 파손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하자, 물량부족이나 파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0.6 분쟁 중인 물품의 견본을 매수인의 국가의 관보채취에 관한 기존 규칙에 따라 채취한다. 또한, 매도인은 분쟁 중인 물품을 검사하고 견본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은 파손된 포장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은 이 포장을 조사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다.

10.7 이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 매도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상품성이나 특정목적 부합성에 관한 묵시적인 보증 및/혹은

그 외 물량, 품질, 종류, 물품의 특성 및 상태 등이나 소유, 취급, 저장, 수송, 가공, 재료의 사용 또는 처분, 물품의 단독사용이나 다른 물질과 혼용사용에 관한 권고의 적정성에 대한 보증을 비롯하여 어떤 권술이나 보증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도 하지 아니한다.

10.8 위 10.7조의 이하 10.9조에 따라 이 조건에 규정된 부적합 사항의 시정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책이 되며, 이로써 건강과 재사용의 안전에 관하여 적용법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제조물 책임)가 아닌 한, 물품의 부적합이나 하자 또는 결함에 관하여 그것이 보증책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경고 실패나 테스트 실패 등),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든, 매도인의 모든 책임(과실, 간접, 특별, 다중, 조건부 혹은 결과적 손해 포함)은 이행된 것으로 한다.

10.9 적용법규상 허용되는 최대한까지 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윤이나 이익손실, 지출의 용도손실, 매수인의 고객 또는 다른 물품 사용자의 손실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 다중, 조건부 또는 간접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경고실패나 테스트실패 포함), 무과실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사전에 손실이나 손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총책임을 매수인은 매수인이 문제의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적용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매도인의 과실, 사기 혹은 기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이나 부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0.10 매수인은 매수인의 부주의나 부작위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매수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품이나 물질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청구나 소송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비용 포함), 화해, 판결금액 및 경미로부터 매도인, 그 이사, 위임된 대리인을 면책한다.

## 11. 미필유지

매수인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일개 된 상품에 관한 지식, 상업적 정보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미필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미필유지의무는 정보의 공개 당시에 매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공지의 사실이거나, 매수인 측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를 입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2. 준거법과 분쟁

12.1 이 판매일반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판매일반조건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기타 계약은 매도인의 주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실제법이 적용되며, 당해 실제법은 신의사법의 원칙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폴리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2.2 이 판매일반조건에 따른 물품의 매도와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임명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동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장소는 런던, 파리, 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뉴욕이나 싱가포르 중에서 국제중재위원이 결정할 때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중재결정을 집행가능하게 하는 당사자든지 원할법원에서 중재판정의 확정을 허가하거나 달리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

12.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원할법원이거나 기타 당국에서 연체된 경우 시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13. 기타

13.1 관할지의 어느 법원이나 행정 기관이 계약의 어느 규정이 부호, 집행불능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13.2 부호, 집행불능 또는 위법한 규정 중 일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당해 규정이 유효, 집행가능 또는 합법적인 규정이 될 경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13.3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조건상 권리, 이익이나 의무를 양도, 이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매도인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류 조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법륜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

## 14. 해석

매도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승인하였다든 사실은 분쟁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류 조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법륜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